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75
----------	-------

발의연월일 : 2026. 5. 27.

발 의 자 : 노종면 · 김우영 · 서영석
허종식 · 최민희 · 채현일
임오경 · 권향협 · 김 현
진성준 · 조계원 · 김 윤
정일영 · 김기표 · 서삼석
강득구 · 박용갑 · 서미화
윤종균 · 정진욱 · 박선원
최혁진 · 문금주 · 김문수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해당 법령 체계 및 구조를 참고하여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 허위조작보도를 정의하고 이를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비함.

아울러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이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함.

한편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등청구 권한, 정정보도등 계

재 방식, 손해의 배상 등의 수단은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외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절차 및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여부 및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및 결과 등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또한 지난 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구조를 반영하여 허위보도 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매개”를 “인용(引用)과 매개”로 한다.

제2조제13호 본문 중 ““언론사등의”를 ““언론사의”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을 “언론사”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을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사 또는 제작물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를 “언론보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별도로 보도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언론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그 보도 전부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을 “언론보도의 사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호 본문 중 “언론의 기사를”을 “언론보도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제19호의3 및 제2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근거 제시 행위와 제시된 근거는 언론보도에 해당할 수 있다.

17의2. “허위보도”란 언론보도 가운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17의3. “조작보도”란 언론보도 가운데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17의4. “허위조작보도”란 허위보도 또는 조작보도 중 허위보도 또는 조작보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9의2.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란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보도, 인용할 목적으로 제작·편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9의3.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22. “언론등”이란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3. “언론사등”이란 언론사와 언론등의 사업자 또는 제공자를 말한

다.

24.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언론사의 대표자와 언론등의 사업 또는 제공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5. “언론보도등”이란 언론사등이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자체 제작을 통하여 알리는 행위와 그 제작물, 그리고 이를 인용 또는 매개하여 재확산하는 행위와 그 제작물을 말한다.

26. “허위보도등”이란 언론사등이 허위보도 또는 조작보도를 하거나 허위보도 또는 조작보도를 인용 또는 매개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용된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27. “허위조작보도등”이란 언론사등이 허위조작보도를 하거나 허위조작보도를 인용 또는 매개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용된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피해구제의 원칙”을 “피해구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을 “언론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도 내용과”를 “보도, 인용, 매개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를 “언론보도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원행정처장이”를 “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하였던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법」”을 “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하였던 자로서 「변호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도 업무”를 “보도·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학식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당원”을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의 제목 “(사무처)”를 “(사무처와 중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 그”를 “, 제4항에 따른 중재지원센터의 운영 등 그”로 한다.

- ④ 언론보도등으로부터 피해를 구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중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처에 중재지원센터를 둔다.

⑤ 제4항의 중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 신청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허위 및 조작 여부, 허위조작 여부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 조사
2. 이 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의 이행 여부 관리 및 감독
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제14조제1항 본문 중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를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있을 후 2년”으로,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를 “언론사등에”로, “정정보도를”을 “정정 또는 삭제와 별도의 정정보도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민사소송법」 상”을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제시된 근거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사실관계가 누락된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을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내용·크기”를 “내용·크기·방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도”를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속 보도, 인용, 매개 중인 언론보도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의 공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을 “사본,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공표 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을 “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기록등”이라 한다)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 기간 등은 해당 언론보도등이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 언론사등의 매체력, 정
정보도 대상 언론보도등의 전파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1.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언론보도등
이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등장한 후 첫 순서에 자막
(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으로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통상적인 속
도의 음성으로 읽을 것
2. 신문: 언론보도등이 게재되었던 지면(紙面)의 좌상단에 게재할 것
3. 인터넷신문: 인터넷 대표 주소로 접속할 때 표출되는 첫 화면(이
하 “첫 화면”이라 한다)의 최상단과 이용자가 정정보도등 및 정정
보도청구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하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이라 한다)에 게재할 것
4. 인터넷뉴스서비스: 첫 화면 또는 보도 전용 화면의 최상단과 정
정보도등 확인 화면에 게재하며, 정정보도 대상 언론보도등이 첫
화면에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정정보도 역시 반드시 첫 화면에도
게재할 것(다만,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매개한 언론보도등에 대한 정
정보도는 매개 대상인 언론보도등에 대한 정정보도를 매개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지정된 제목, 내용, 최초 노출화면을
준수하여 제작한 정정보도 동영상 콘텐츠를 정정보도 대상 동영상
콘텐츠가 게재되었던 위치와 무관하게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접속화면 중 최상위 화면에 게시할 것

다만,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중인 언론보도등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자료등을 폐기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중인 언론보도등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전자기록등을 폐기할 수 없다.

제16조제1항 중 “사실적 주장에”를 “사실관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②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제시된 근거 또는 누락된 사실관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 등 그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 취지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인터넷뉴스서비스에”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경우 지

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를 “뒤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최초의 결정, 판결 또는 합의가 나왔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정, 판결 또는 합의의 내용을 알리는 표시(이하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를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수용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언론보도등의 제공·매개 관계에 있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공·매개 관계의 상대방에게 청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행위

를 중단하면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등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④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를 제작할 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인, 청구대상, 청구일
2.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
3.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현황
4.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조정 또는 중재 여부 및 결과
5.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기 여부 및 결과
6. 정정보도청구등과 함께 손해배상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및 결과

⑤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보도등의 제공·매개 관계에 있는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하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 중 최상위에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으로 연결되는 안내를 표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결과가 확정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날까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조정 결정(제22조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을 포함한다), 중재 결정, 소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언론보도등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손해배상액을”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를 구별하여 손해배상액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사무처”를 “중재지원센터”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때에는 방송”을 “때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방송”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손해의 배상)”을 “(손해배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손해가”를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로,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를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제8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법원은 제5조제2항을 고려하여 제2항의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
 4.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에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언론보도등이 이미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판명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 내용의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언론보도등이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언론보도등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허위 또는 조작 내용을 제목이나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 언론사등의 재산상태
 10. 가해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 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언론보도등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언론보도등의 보도·인용·매개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언론사등의 자료제출 의무) ① 언론사등은 법원이 제15조제7항에 따른 자료등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기록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법원은 언론사등의 매체력, 언론보도등의 전파력, 언론보도등의

허위 및 조작 여부, 허위조작 여부, 손해액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제15조제7항에 따른 자료등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기록 등의 제출 또는 제시를 언론사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언론사등이 자료 제출 또는 제시하는 절차는 「특허법」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은 “언론보도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론사등이 제출 또는 제시한 자료와 그 내용은 법원이 정한 목적과 방법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결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30조의3(입증책임) ① 언론보도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사등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등을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보도등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한 경우
2.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보도등의 반박적 주장이 담긴 보도를 동시에 인용 또는 매개한 경우

③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언론보도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언론보도등의

피해자가 부담한다.

제30조의4(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제5절에 제33조·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한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인용 판결,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 또는 유죄판결로 확정된 언론보도등을 2회 이상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사등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항(허위보도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의견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사본을”을 “사본,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정정보도등에 관한 알림 표시 의무, 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 사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와 제30조에 따라 청구된 손해배상이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되었으나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삭 제>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단서 신설>

15.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사 또는 제작물을----- . 다만,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근거 제시 행위와 제시된 근거는 언론보도에 해당할 수 있다.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언론보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별도로 보도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언론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그 보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
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도 전부를 삭제하는 것을 포
함한다.

17. -----언론보
도의 사실-----

-----.

17의2. “허위보도”란 언론보도
가운데 내용의 전부 또는 일
부가 허위인 기사 또는 제작
물을 말한다.

17의3. “조작보도”란 언론보도
가운데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
도록 변형된 기사 또는 제작
물을 말한다.

17의4. “허위조작보도”란 허위
보도 또는 조작보도 중 허위
보도 또는 조작보도에 해당한
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
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
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
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사 또
는 제작물을 말한다. 다만, 풍
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8. -----
-----언론보도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생략)

<신설>

<신설>

20. · 21. (생략)

<신설>

-----.

-----.

19. (현행과 같음)

19의2.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란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보도, 인용할 목적으로 제작·편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9의3.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20. · 21. (현행과 같음)

22. “언론등”이란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3. “언론사등”이란 언론사와 언론등의 사업자 또는 제공자를 말한다.

24.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언론사의 대표자와 언론등의 사업 또는 제공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5. “언론보도등”이란 언론사등이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자체 제작을 통하여 알리는 행위와 그 제작물, 그리고 이를 인용 또는 매개하여 재확산하는 행위와 그 제작물을 말한다.

26. “허위보도등”이란 언론사등이 허위보도 또는 조작보도를 하거나 허위보도 또는 조작보도를 인용 또는 매개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용된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27. “허위조작보도등”이란 언론사등이 허위조작보도를 하거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

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

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

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

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

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허위조작보도를 인용 또는

매개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

하여 사용된 기사 또는 제작

물을 말한다.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

① 언론등은-----

-----.

② -----

----- 보도,

인용, 매개와-----

-----.

1.·2. (생략)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1.·2. (현행과 같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보도등으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하였던 자로서 법원
행정처장이-----

2. -----
-----언론 관련 사건
을 다수 담당하였던 자로서
「변호사법」-----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 ⑪ (생략)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
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3. -----보도·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
함하여야 한다)-----

4. -----
학식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사람 또는 「공
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직에
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

<신 설>

<신 설>

4.·5.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사무처)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른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
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
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6.·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처와 중재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언론보도등으로부터 피해를
구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중재 활동 지원을 위하
여 사무처에 중재지원센터를
둔다.

⑤ 제4항의 중재지원센터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 신청 대상인 언론보도

④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

등의 허위 및 조작 여부, 허위조작 여부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 조사

2. 이 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의 이행 여부 관리 및 감독

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⑥ -----, 제4항에 따른 중재지원센터의 운영 등 -----.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있
은 후 2년-----언론사등에-
---정정 또는 삭제와 별도의 정정보도를-----.
<단서 삭제>

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②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제시된 근거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사실관계가 누락된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따른-----

-----.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 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

-----.

④ (현행과 같음)

⑤ -----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

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속 보도, 인용, 매개 중인 언론보

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도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의 공표를 포함한다)-----

-. 이 경우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 기간 등은 해당 언론 보도등이 허위 보도등인지 허위 조작 보도등인지의 구별, 언론사등의 매체력, 정정보도 대상 언론 보도등의 전파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1.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언론 보도등이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등장한 후 첫 순서에 자막(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으로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통상적인 속도의 음성으로 읽을 것

2. 신문: 언론 보도등이 게재되었던 지면(紙面)의 좌상단에 게재할 것

3. 인터넷신문: 인터넷 대표 주소로 접속할 때 표출되는 첫 화면(이하 “첫 화면”이라 한다)의 최상단과 이용자가 정정보도등 및 정정보도 청구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

<신 설>

<신 설>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

면(이하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이라 한다)에 게재할 것

4. 인터넷뉴스서비스: 첫 화면 또는 보도 전용 화면의 최상단과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에 게재하며, 정정보도 대상 언론보도등이 첫 화면에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정정보도 역시 반드시 첫 화면에도 게재할 것(다만,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매개한 언론보도등에 대한 정정보도는 매개 대상인 언론보도등에 대한 정정보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지정된 제목, 내용, 최초 노출 화면을 준수하여 제작한 정정보도 동영상 콘텐츠를 정정보도 대상 동영상 콘텐츠가 게재되었던 위치와 무관하게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접속 화면 중 최상위 화면에 게시할 것

⑦ -----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등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전자기록등을 폐기할 수 없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관계에-----

-----.

②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제시된 근거 또는 누락된 사실관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최초의 결정, 판결 또는 합의가 나왔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정, 판결 또는 합의의 내용을 알리는 표시(이하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② 언론보도등의 제공·매개 관계에 있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공·매개 관계의 상대방에게 청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수용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행위를 중

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단하면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 등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④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를 제작할 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인, 청구대상, 청구일
2.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
3.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현황
4.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조정 또는 중재 여부 및 결과
5.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기 여부 및 결과
6. 정정보도청구등과 함께 손해배상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및 결과

⑤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보도등의 제공·매개 관계에 있는

<신 설>

<신 설>

<신 설>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하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 중 최상위에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으로 연결되는 안내를 표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결과가 확정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날까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
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7조(재판) ① (생략)

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
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
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
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
다.

③ (생략)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
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
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
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
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
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
(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재판) ① (현행과 같음)

② -----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손
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
에게 손해가-----
-----구체적인 손해의 액

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5조제2항을 고려하여 제2항의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

도

4.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에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언론보도등이 이미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판명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언론보도등이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언론보도등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허위 또는 조작 내용을 제목이나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 언론사등의 재산상태
10. 가해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신 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언론보도등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언론보도등의 보도·인용·매개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⑦ ----- 제6항-----

-----.

제30조의2(언론사등의 자료제출 의무)

① 언론사등은 법원이 제15조제7항에 따른 자료등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기록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

다.

② 법원은 언론사등의 매체력, 언론보도등의 전파력, 언론보도등의 허위 및 조작 여부, 허위 조작 여부, 손해액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제15조제7항에 따른 자료등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기록등의 제출 또는 제시를 언론사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언론사등이 자료 제출 또는 제시하는 절차는 「특허법」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은 “언론보도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론사등이 제출 또는 제시한 자료와 그 내용은 법원이 정한 목적과 방법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결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30조의3(입증책임) ① 언론보도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 설>

언론사등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언론보
도등을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
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보도
등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한 경우

2.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보도
등의 반박적 주장이 담긴 보
도를 동시에 인용 또는 매개
한 경우

③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
보도등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언론보도등에 고의 또는 과실
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언론보도등의 피해자가 부담하
다.

제30조의4(손해배상 청구의 남용
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
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
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
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
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한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인용 판결,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 또는 유죄판결로 확정된 언론보도등을 2회 이상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사등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항(허위보도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고려하여야 한

<신 설>

<신 설>

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의견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

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신설>

<신설>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4조(과태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 3. -----

--사본, 보도가 사실임을 입
증할 자료-----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정정
보도등에 관한 알림 표시 의
무, 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
사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와 제30조에 따라 청
구된 손해배상이 결정 또는

② (생 략)	<u>판결로 확정되었으나 기한 내 에 배상하지 아니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